

『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3월 25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3일

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(안 제2조)
-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(안 제3조)
- 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(안 제4조)
- 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수료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규제심사 : 관련사항 없음
- 기타 협의 승인 내용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□ 본 「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」은,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라 기존의 「구미시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 부담 조례」, 「구미시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이를 반영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가축분뇨의 개념 재정립(안 제2조)
-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(안 제3조)
- 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(안 제4조)
- 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수료(안 제5조)
-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(부칙 안 제2조)
 - ① 「구미시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 부담 조례」
 - ② 「구미시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
-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(부칙 안 제3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기존의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,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